

장애인 체육회 규약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14. 12. 19.

개정 2015. 01. 19.

개정 2015. 09. 22.

개정 2016. 01. 18.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SeJong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SJSAD)라고 한다.

제2조(목적)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시 경기단체와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시 장애인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읍·면·동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시 가맹단체와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관리·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4. 시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사업 전개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8.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10.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2. 전반적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자문
13. 장애인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성 사업
14. 기타 장애인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를 가맹 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시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시 지부로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가맹단체의 권리와 의무)

-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가맹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 및 탈퇴)

-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 및 탈퇴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3. 이 사 :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4. 감 사 : 2인

5.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같다.
-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에는 신입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며, 부회장 중 1인은 정무부시장, 1인은 부교육감으로 선임하고, 이하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이사에 는 장애인 선수 출신과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지부장을 각각 1인 이상을 선임 할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이사 정수에 1인 이상은 가맹단체의 대표 또는 유형별 체육단체장을 포함 할 수 있다.
- ⑤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⑦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 ⑧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인회계사 근무 경력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⑨ 임원의 취임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사임)

-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때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시하는 사항
 3. 장애인체육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지를 갖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

용, 기타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4조(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

-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및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단체 및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
 -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지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4. 해당 지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의결·집행 기관이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 및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6.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가맹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8. 규약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2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긴급처리)

-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회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상임 이사회를 통해 안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의결된 안전에 대해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0조의 2(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사무처장 등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 이사는 총무이사, 경기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운영이사, 대외협력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규약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긴급 처리 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21조(각종 위원회)

- ① 장애인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위원 약간인 으로 구성한다.
- 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장 생활체육위원회

제22조(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체육회규약 제4조 제3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조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이내를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위원은 해당 체육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회장의 임명을 거쳐야 한다.

제24조(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가맹단체

제25조(기관) 가맹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제26조(임원선임 및 보고)

-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자산)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체육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2. 기 금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 회 비
- 5.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 6. 사업수입금
- 7. 기부금 및 찬조금
- 8. 기타 수입금

제29조(자산의 구분)

- ① 장애인체육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부동산
 - 2. 기 금
 - 3.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장애인체육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0조(재산관리)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장애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단, 시비보조금은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한다.)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기 위한 적립

제32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장애인체육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 및 적립금)

- ①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34조(회계년도)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가맹단체의 회계감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36조(사무처)

- ①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8조(사무처 직제와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9조(경영공시) 장애인체육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표창 및 징계)

-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규정개정) 장애인체육회의 규정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약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이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 개정) 「가맹단체 운영 규정」, 「가맹단체 가맹 및 탈퇴 규정」, 「읍·면·동 지부 운영 규정」, 「관리단체 운영 규정」,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규정」, 「회계 규정」, 「문서관리 규정」, 「체육지도자 임면 규정」 중 “본회” 를 “장애인체육회” 로 일괄 개정한다.

부 칙 (201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1.16.)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5.08.)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1.19.)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09.22.)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01.18.)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약 제9조(임원의 임기)는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와 감사부터 적용한다.